무배당 리치저축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리치저축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6 년 12 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리치저축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가. 무배당 (①)리치(②)저축보험(5 년만기형)
나. 무배당 (①)리치(②)저축보험(수익형)
다. 무배당 (①)리치(②)저축보험(생활자금형)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또는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 년만기형	5 년 만기	2 / 3 년납	만 15 세 ~ 최고 70 세	월납
수익형	7 년 만기	5 년납		
	10 년 만기	5 / 7 년납, 전기납		
	15 년 만기	5 / 7 / 10 년납, 전기납		
	20 년 만기	5 / 7 / 10 / 15 년납, 전기납		
생활자금형	10 년 만기	5 / 7 년납		
	15 년 만기	5 / 7 / 10 년납		
	20 년 만기	5 / 7 / 10 / 15 년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 1 구좌 기준: 최저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가입나이별 최저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5 년만기	2 년납	-	-	만15~70세	-	-
	3 년납	-	-	만15~62세	63~69세	70세
7 년만기	5 년납	-	-	만15~67세	68~70세	-
10 년만기	5 년납	만15~53세	54~70세	-	-	-
	7 년납	만15~21세	22~70세	-	-	-
	10 년납	만15~63세	64~70세	-	-	-
15 년만기	5 년납	만15~53세	54~70세	-	-	-
	7 년납	만15~21세	22~70세	-	-	-

	10 년납	만15~70세	-	-	-	-
	15 년납	만15~50세	51~70세	-	-	-
20 년만기	5 년납	만15~53세	54~70세	-	-	-
	7 년납	만15~21세	22~70세	-	-	-
	10 년납	만15~70세	-	-	-	-
	15 년납	만15~50세	51~70세	-	-	-
	20 년납	만15~50세	51~70세	-	-	-

나.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기간 중「보험기간-2 년」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 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 또한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5 년만기형

기본보험료가 100 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할인 또는 보험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매월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100 만원 초과 300 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100 만원 초과부분의 0.1%
3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2,000 원 + (기본보험료 중 300 만원 초과부분의 0.3%)
500 만원 이상	8,000 원 + (기본보험료 중 500 만원 초과부분의 0.1%)

나. 수익형 및 생활자금형

기본보험료가 30 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할인 또는 보험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매월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30 만원 초과 50 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 만원 초과부분의 0.8%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1,600 원 + (기본보험료 중 50 만원 초과부분의 1.3%)
1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8,100 원 + (기본보험료 중 100 만원 초과부분의 1.0%)
300 만원 이상	28,200 원 + (기본보험료 중 300 만원 초과부분의 0.7%)

다. 보험료 할인을 선택한 경우 '가' 및 '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라. 보험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할 때(선납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가' 및 '나'에 따른 할인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마.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 내지 '라'를 적용한다.

7. 장기납입 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5 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회차 계약응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납입회차	장기납입 보너스금액
6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1%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계약의 경우,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를 적용한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12 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1.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액이 1구좌당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가산금액(고액계약할인금액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가산금액(고액계약할인금액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더 이상 인출 할 수 없다.

마.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바. 계약자는 '생활자금형'을 선택한 경우 적립액을 인출할 수 없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다만,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내부지표 $\times (1-\alpha) +$ 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산출식

내부지표 $= \dfrac{2 \times (I-E)}{A_{12} + A_0 - (I-E)} \times 100$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외부지표= 국고채(5년)수익률$\times \beta_1$+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times \beta_2$
+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times \beta_3$

(주) 1.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β_1 : 국고채 가중치 $= \dfrac{a}{a+b+c}$

β_2 : 회사채 가중치 $= \dfrac{b}{a+b+c}$

β_3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d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3.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dfrac{A/B + C}{A + C}$

내부지표의 가중치$(1-\alpha) = 1 - \d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5 년납	3 년
7 년납	4 년
10 년납 이상 (전기납 제외)	5 년
전기납	신청불가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 회를 한도로 하며, 1 회 신청당 12 개월(최소 3 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 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 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다' 및 '바'에서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 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아. '다' 및 '바'에서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자. 계약자는 '수익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15.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12×Min(보험료 납입기간, 10)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온라인 채널은 제외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기본보험료의 공제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사.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